

#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임규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18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임규호 의원(1명)  
찬성자: 김성준,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민병주, 박승진,  
박칠성, 서상열, 송도호,  
송재혁, 오금란, 왕정순,  
유정희, 이민옥, 이상욱,  
이영실, 이용균, 임종국,  
한신, 홍국표 의원(23명)

## 1.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자율방범단체의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념행사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율방범대의 날 행사를 시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날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5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행사)</u></p> <p><u>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날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5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행사)	△	【추계 곤란】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으로 검토계획된 바 없어 현재로선 객관적 추계가 곤란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5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행사)의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용은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업지원과)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객관적인 추정이 곤란함
    - 다만,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1차년도의 경우 자율방범중앙회 차원에서 전국단위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주관 지역행사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형태가 계속될 것을 가정할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서울시 재정 지출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임

(참고)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 (추진여부 및 단위규모 결정 필요) 단위별·인원별 추진규모 편차가 크므로 정책적 결정 전제 필요
  - 추계를 위한 자료조사 결과 행사 특성상 전국단위, 광역단위(서울시), 기초단위(자치구) 등 단위별로 상이한 규모를 보이므로 추진여부 결정이 전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유사시례인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문의결과 전국단위 및 관서별 추진으로 확인) 소요비용 등을 활용한 합리적 추계 또한 현재로서는 곤란함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 제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